

2026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자체기준

□ 지원 자격

-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(대학원생 제외)
- 사업 당해연도 1월1일 기준 만 39세 이하(86.1.1. 이후 출생)로 미혼인 자
 - * 단, 1월 1일 출생자(주민등록상)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봄
-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
(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)
-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
-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
 - * 단,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(면제)
 - ** 초당대학교 대학 소재지 기준 원거리 미인정 지역: **무안군**
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
 - * 신·편입생,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 - *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
 - *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
 - *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

□ 우선 지원 기준

- 대학에 교부된 사업비(장학금)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(장학생)가 발생 시 교부된 예산 한도 내 지원을 위함
- 비(非)기숙사생 > 기숙사생 > 기초생활수급자 > 차상위계층 > 다문화가정 > 다자녀 > 성적 높은 순 > 학년 낮은 순

□ 지급 제외 기준

- 재학생이 아닌 자(휴학생, 학사학위취득유예자)
- 9월 또는 12월 중 학적변동(자퇴, 휴학 등) 발생자
- 대학이 별도로 정한 사업 일정(지급 요청, 소명 제출 등) 미준수 시 지원 제외
- 대학이 별도 지원 중인 교내 주거장학금(기숙사비 등) 수혜자
- 계절학기 수강, 기숙사 등 중도 취소 환불자

□ 장학금 지급 기준

○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 지원

- * 방학 중(7~8월, 1~2월)에는 지원하지 않으며,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

○ 지급 주기

- * 매학기 20만원 정액 지원분(3, 9월)지원 대상자 확정 후 차월 지급
(학생의 별도 지급 요청은 필요 없으나, 학적 상태 및 서약서 작성 확인 후 지급)
- * 월별지급을 기준으로 하며, 직전 월 검토 후 차월 지급 예정
- * 계절학기 지원분(7~8월, 1~2월) 지급 요청서 검토 후 2개월 분 일괄 지급
- * 3월 이후 학적변동이 발생 할 경우, 학적변동 발생 월 주거 관련 비용부터 미지급
- * 그 외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,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시기 조정 가능

※지급주기: 매월 지급(최대 20만원)

구분	1학기				하계 (계절학기)	2학기				동계 (계절학기)
해당 월	3월분	4월분	5월분	6월분	7~8월	9월분	10월분	11월분	12월분	1~2월
지급 월	4월 말	5월 말	6월 말	7월 말	9월 말	10월 말	11월 말	12월 말	1월 말	3월 말